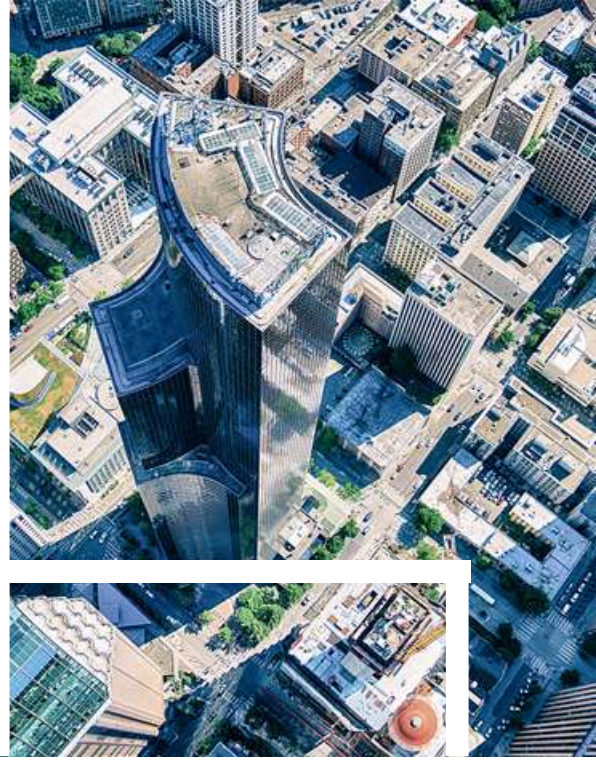


# Samil Global Tax Update

March 2019



##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케냐	케냐-모리셔스 조세조약 무효 판결
아르헨티나	2019년 주요 세법 개정안
EU	수익적 소유자 관련 사법재판소 판결
Cross border M&A	간접양수도



삼일회계법인

##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 프랑스

#### • 디지털세 도입

3월 6일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판매에 대한 세금을 도입함

##### (1) 과세되는 서비스

- 사용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공급 (예: 인터넷 마켓,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앱스토어)
-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메시지를 배치하는 서비스

##### (2) 과세되지 않는 서비스

- 사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통신 또는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예: 비디오/오디오 스트리밍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메신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 경제부장관이 열거한 금융 서비스(특정 요건 충족 필요)
- 특수관계 법인 간 제공되는 용역 중 프랑스 상법에서 정하는 항목

##### (3) 과세되는 기업

디지털세는 연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프랑스에서의 매출이 2천 5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회사에 적용됨 (연결 기준)

##### (4) 영토 및 과세표준

- 디지털세는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파생된 소득에 적용됨

- 서비스 제공자 또는 소비자가 프랑스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이는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프랑스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디지털 존재 비중(Digital presence ratio)에 따라 결정됨

- 과세표준은 프랑스에 제공되는 과세 용역에 대한 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5) 세율과 신고/납부

- 과세대상 매출에 대해 3%의 균일세율 제안 중
-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 의무가 유사하며, 전기 소득 기준으로 4월/10월에 분할납부 필요

#### • PwC's Observation

- 상기 초안은 몇 주 내 프랑스 의회에서 수정될 수 있음
- 최근 유럽 내 각국에서 이러한 디지털세가 지속적으로 논의 및 도입되는 상황이며, 프랑스로 이에 발 맞춰 초안이 발표됨.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Multinational 기업들은 이러한 프랑스 내의 과세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케냐

#### • 케냐-모리셔스 조세조약 무효 판결

Tax Justice Network Africa(이하 TJNA)가 2012년 5월 11일에 체결된 케냐-모리셔스 조세조약(이하 'DTT'; 체결되었지만 미시행)의 합헌성과 유효성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함

- 케냐-모리셔스 DTT는 케냐 세수 누출로 이어져 케냐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의 승인 등 조세조약 체결 시 요구되는 법적 절차 미수행

- 판결

법원은 TJNA가 케냐의 세수 손실과 케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상세 예시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함

절차적 측면에서 케냐-모리셔스 조세조약이 체결에 대한 통지/공고절차의 일부만 수행되었고, 의회에 동 통지를 고지하는 등 Statutory Instruments Act, 2013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미이행되었다고 판결

• PwC's Observation

이 판결로 인해 Statutory Instruments Act, 2013의 시행일인 2013년 1월 25일 이후로 체결된 다른 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야기됨

따라서 만약 케냐 정부가 체결한 다른 조세조약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런 조세조약 중엔 한국과의 조세조약도 해당될 여지가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케냐 정부의 절차상 하자 검토 및 수정 보완 작업이 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기업 중 케냐와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 이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아르헨티나**

**2019 주요 세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 법인세법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국제 중개(Intermediary)법인을 통한 수입 및 수출 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규정 신설
- 중개법인을 통한 상품 거래 시 상품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며, 저세율 혹은 조세피난처로 취급되어야 할 관할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포함됨

- 개정된 규정은 그 외에도, 비교 가능성 분석, 거래 위험 평가 및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며, 종속 대리인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 사례를 명확히 함

**(2) 간접양수도 양도소득세**

- 기업집단 내 간접양수도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intra-group relief regime) 지침 추가
- 간접 양수도가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 집단(economic group)'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간접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양도인이 직간접적으로 양수인의 납입 자본금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한 개 이상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납입자본금의 80%이상 보유하고;
  - 그러한 관계가 간접양수도 이전에 최소 2 년 이상 지속된 경우
- 단,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 시 혜택이 배제됨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균등세**

- 새로운 배당 원천세 제도 도입과도기간인 2018 - 2020 과세연도 원천소득 배당 시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7%이며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13%임을 명확히 함
- 또한 균등세(Equalization tax,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 배당 시 법인세율과 동일한 35%로 부과되는 세금)의 상세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추가됨
  - 2017 년 이후 발생한 회계 상 이익 중 과거 법인세율인 35%의 세율로 기과세된 부분은 배당 원천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

**(4) 과소자본세제**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원천세가 부과된

경우 (조세 조약 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포함), 새로이 제정된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이 적용 배제됨을 규정함

- 다만,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금융에서 발생하는 외환손실은 상기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 • 부가가치세법

연방 세무당국은 비거주자의 아르헨티나 내에서의 용역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규정을 발표함

- 아르헨티나에서 과세 거래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차입자와 세입자 포함)은 대체 납세자로서, 비거주자의 과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관련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대체납세자는 연방 세무당국에 등록하고 거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대체납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VAT return) 시에 공제됨

간이사업자(simplified regime)에 해당하는 final customers 와 small taxpayers 는 대체납세자로 지정될 수 없음

### 수익적 소유자 관련 사법재판소 판결

유럽 사법재판소(CJEU)가 덴마크 기업에서 EU 내 모기업으로 이자와 배당이 지급된 후 다시 지급금이 제3국의 최종 모기업으로 전달된 경우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른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사건에 판결을 내림

### • 사실관계

- 덴마크 기업은 룩셈부르크 등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된 모기업이 소유하고 있었고, 동 모기업은 다시 버뮤다 등 제 3국의 회사나 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투자자로 조직된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 덴마크 기업은 EU 내 모기업에 이자와 배당을 지급 시 Parent-Subsidiary Directive(이하 "PSD") 또는 Interest/Royalty Directive(이하 "IRD") 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주장
- 덴마크 세무당국은 해당 소득의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PSD 및 IRD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 판결

- 해당 사례에서 이자와 배당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IRD 는 수령자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PSD 는 동 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자 논란은 이자소득에서만 발생함
- 유럽 사법재판소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형식적으로 확인된 소득 수취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소득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명시함
-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PSD 와 IRD 원천징수세 면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른 약정 등으로 권리 남용이 성립되는 경우 EU 의 남용 방지 원칙에 따라 해당 혜택을 부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함
- 모회사가 자금수취 직후 다시 최종 모회사로 전달되는 경우나 수취인의 실질(Substance)이 부족한 경우 '권리 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 이때, EU 회원국은 내국 법 상 별도의 탈세방지 조항이 없더라도 EU 의 일반적인 탈세방지

조항을 적용하여 특정 거래의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PwC's Observation**

- 상기 판결은 앞으로 IRD 와 PSD 를 적용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익적 소유자'와 '권리 남용'과 같은 용어를 해석하는 데 보다 깊은 주의가 요구함
- 또한 판결은 최종 모기업이 제 3 국에 위치한 경우 국제 그룹 구조와 EU 자회사에서 모회사로의 자금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자산이 소재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함.

다국적기업들의 간접 양도를 통한 원천지국에서의 조세회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의 경우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규정을 도입함.

이러한 간접양도 과세규정을 도입한 나라는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과세요건 등에 대해선 관련 Local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Cross-border M&A

- Cross-border M&A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실무적 이슈 내지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함.

- **간접 양수도란?**

간접양도(Indirect transfer)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 대상 자산을 보유자가 직접 양도하는 대신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 Global Tax Services 본부

---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pwc.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pwc.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han-kyu.kim@pwc.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ong-hyeon.kim@pwc.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n-dae.park@pwc.com

**박태진, Partner**

02 709 8833

taejin.park@pwc.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unghwan.cho@pwc.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inlee@pwc.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 국제조세전문 컨설팅조직으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해외신규투자/인수합병/운영/철수 시 직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